

‘07. 하수관거정비 BTL 민자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심사 보고서

1. 심사 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 10. 18. 제천 시장
- 회부일 : 2006. 10. 18.
- 상정일 : 2006. 10. 25(제12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)

가. 제안이유

-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7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우리 시가 대상지로 확정됨에 따라 총사업비(추정액) 75,700백만원 【(국비)53,000백만원(70%), 기금16,100백만원(21%), 도비3,300백만원(4.5%), 시비3,300백만원(4.5%)】에 대한,
- 자체부담금의 의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임. (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,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)

나. 주요내용

〈사업개요〉

- 사업비 및 사업량

처리구역	사업량 (㎢)	추정사업비(백만원)					비고
		계	국비 (70%)	기금 (21%)	도비 (4.5%)	시비 (4.5%)	
제천시 관내일원의 3개분구 (용드천, 고암천, 하소천)	88.72	75,700	53,000	16,100	3,300	3,300	

○ 금회 BTL 사업대상지 개요

처리구역	처리분구	사업량 (km)	배수설비 (개소)	사업비 (백만원)	사업기간	비고
계		88.72	4,348	75,700		
제천	용두천분구	16.92	1,862	18,300	2007~2011	
	고암천분구	32.19	1,545	26,000		
	하소천분구	39.61	941	31,400		

〈 사업추진방식 〉

- 채권자(사업시행자) : 민간투자사업자
- 채무자(주무관청) : 제천시
- 추진방법 : 민간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설치후 제천시에 이전하고 사업이 완공된 익년부터 20년간 임대료를 받아 사업비를 회수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최동수)

-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8호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고
-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및 제4조 등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시설등 44개의 사회기반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있음.
- 환경부는 하수관거를 단기간에 정비하여 그 기능을 되살리고 하수처리장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BTL 방식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간 5조 6천억을 투자 하수관거 8,824km를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 하였으며, 우리시가 2007년 하수관거 BTL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었음.

- BTL 사업시행시 장기간에 걸쳐 시행해야 할 하수관거 사업을 단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계획이 완료(2010년)될 때부터 20년간 매년 원리금 상환을 위한 시비를 확보하여야 함.
- 따라서 총사업비에 대한 재원별 부담현황과 시비 부담의 재원대책에 대한 검토와 사업완료후의 원리금과 이자에 대한 시비 부담액에 대해서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.
- 또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BTL 방식으로 시행시 사업시행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의 대책, 사업시행 방법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,
-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의 효율성, 사업완료후의 운영방안 특히 재원확보 대책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.

4. 질의 답변 요지

가. 질의요지

-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지역에 하수관거사업은 100% 완료되는지 여부와 원리금과 이자를 포함했을때 총비용중 시비 부담액 전체가 얼마인가? 사업시공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? (유영화의원)
- 기금이 21%로 161억인데 기금조성에는 지금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는지? (김병창의원)
-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도의회는 부담에 대해서 도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인지 여부? (김명섭의원)
- 본 사업시행에 따른 조직, 인력 대책은? (조덕희의원)

나. 답변요지 < 환경관리사업소장 김기덕 >

- 시가지가 확산이 되거나 더 신규로 추가될 곳이 생기지 않고 현 도시구모로 유지된다면 사업이 완료되며, 연간 총 원리금 상환액은 66 억으로 시비부담율은 4.5% 매년 3억 3,4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함.
-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법으로 사업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, 인력과 기술면에서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우리시에서 추진하려면 추진단이 구성되어야 함

- BTL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분 4.5%는 5년뒤에는 상당한 압박을 받기 때문에 도비지원에 어려움이 있다함에 따라 도에 도비지원을 협의한 바 있어 부담분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
- 지자체 채무자 자체가 제천시이고 의회의 동의사항이나 도에서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은 동의사항이 아님.
-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운영시 행정적 지원만 하고 조직과 인력 확보가 필요 없으며, 만일 제천시에서 대규모 사업 추진시 조직단이 편성 운영된다면 BTL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보할 계획임

5. 소수의견

“ 없 음 ”

6. 토론요지

“ 없 음 ”

7. 심사내용

“ 없 음 ”

8. 심사결과

“ 원안가결 ”

9. 심사보고 붙임서류

‘07.하수관거정비 BTL 민자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1부. 끝.